

부산광역시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가 2002.12.31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완전한 마무리와 내실있는 정착 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지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6개월 연장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존속기한 1년 6개월 연장
 - ▷ 총무국 주민자치과 존속기한 : 2002년 12월 31일 ⇒ 2004년 6월 30일

3. 관계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
- 한시기구 연장지침 [자치 13101-22565(2002.12.5)]

4. 검토의견

이번 조례 개정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동기능 전환 시책추진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지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 12. 31에서 2004. 6. 30까지로 1년 6개월 연장 운영키로 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2. 1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립